

축산업의 경영관리 (7)

민 경 래
퓨리나 코리아 경영지도부장

4. 부채 및 자본

지난회까지 대차대조표의 자산지부(資產之部)에 대해서 설명하였거니와 이번회에는 기업으로서의 축산업에서 운용활용되고 있는 기업자산의 자금출처를 나타내는 부채 및 자본에 관하여 설명하겠다. 전에 자산지부에 대해서 설명할때 간단한 설명이 있었듯이 자산(資產)이란 기업자본이 사업목적에 따라 배분(配分) 운용(運用)되고 있는 상태를 나타내 주는 것이고 부채 및 자본지부는 앞에서 말한바와같이 기업자본의 출처를 나타내주는 것이다 부채 및 자본을 통털어서 부채라고해도 좋다. 그 이유는 부채란 외부로부터 차입(借入)한 자본이거나 또는 기업외부에 대한 미불액등의 채무를 말하며 자본이란 기업주가 출자한 자본금과 사업운영에 따라 벌어놓은 이익에서 이익배당을 하고 유보해둔 유보이익(留保利益) 즉 양여금을 합해서 자본이라고 회계학상 구분하고 있으나 자본금이나 양여금도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는 기업주에게 어느때인가는 지불해야 할 빚 즉 부채임에는 틀림없다. 따라서 기업외부에 대한 채무(債務)인 부채뿐만 아니라 자본도 부채임으로 이두가지를 통털어 부채라고 해도 좋은 것이다.

단지 회계학상 부채 및 자본으로 구분하는 이유는 부채는 기업외부에 대한債務이고 자본

이란 기업내부에 대한 채무임을 구분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부채 및 자본을 통털어 광의의 자본이라고도 한다.

1. 부채(負債)

위에서 설명한 바와같이 부채란 기업외부에 대한 채무이며 이에는 다음과 같은 여러가지 형태의 부채가 있다.

1) 유동부채(流動負債)

유동부채란 부채중 그상환기한이 1년이내인 것을 말하며 단기부채(短期負債)라고도 한다. 전에 자산에 관하여 설명할 때도 유동자산이란 구분이 있었듯이 회계학상으로 유동(流動) 또는 고정(固定)으로 구분하는 기준은 그성질에 따라 단기(통상 1년이내) 또는 장기(통상 1년이상)로 구분하기 위한 것이다. 기업의 부채로서 유동부채에 속하는 것으로 여러가지가 있으나 축산업의 입장에서 유동부채로 구분할 수 있는 것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수 있다.

(1) 미불병아리代(또는 가축대 미불금)

병아리, 돼지 또는 송아지 젖소등과 같은 가축을 외상으로 구입하고 아직 지불하지 못한 외상매입잔금을 말하며 이 미불 외상매입금은 통상 1년이내에 지불할 조건으로 외상매입한 것임으로 유동부채에 속하나 종우 또는 젖소등을 외국으로부터 장기차관에 수입했다면 이 또한 유동부채에 포함시키지 않고 다음

에 설명할 장기부채에 포함시킨다.

(2) 미불사료대

외상으로 구입한 배합사료 또는 탈지장 소麦피 맥강등과 같은 단미사료대 미불잔금을 말하며 이 또한 통상 1년이내에 지불할 조건으로 구입했을 것임으로 유동부채에 속하나 옥수수 또는 밀같은 곡물을 외국으로부터 장기차관에 의하여 수입했다면 이 또한 유동부채에 포함시키지 않고 장기부채에 포함시켜야한다.

(3) 외상매입금

위 (1) (2) 항에서 설명한 가축대미불금과 사료대미불금도 원칙적으로 외상매입금계정에 포함시켜도되나 축산업의 경우 가축대 미불금과 사료대 미불금이 외상매출금의 대부분을 차지함으로 별도 계정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으나 이것들도 함께 외상매입금계정에 포함시키는 경우에는 별도로 보조장 기록을 하여야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외상매입금이란 가축대미불금과 사료대 미불금 이외의 물품을 구입하고 미불잔금이 있는 것들을 통털어서 이계정에 포함시켜 처리하면된다.

외상매입금도 통상 1년이내에 지불해야 하므로 유동부채에 속한다.

(4) 지불어음

이미 발행하고 아직 지불치못한 연어음 또는 연수표등을 말하며 이들 또한 1년이내에 지불할 것임으로 유동부채에 속한다.

(5) 가수금(假受金)

가수금이란 이자부담이 없는 일시적으로 기업이 차입한 부채를 말한다. 흔히 기업운영도중 자금이 부족한 경우 기업주가 기업주 개인의 사유재산중에서 그때그때 필요한 자금을 일시적으로 조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가수금이다.

기업주 개인의 사유재산은 기업의 자산이 아님으로 부채이며 이자부담이 없음으로 다음에 설명할 차입금과 구분한다. 만일 기업운영상 자금이 부족한 경우 기업주가 자금을 일시적으로 조달하지 않고 장기적 또는 영구적으로 자금을 조달하였다면 이는 가수금이 아니고 자본의 증자(增資)인 것이다. 이경우 자본금이 조달된 즉 증자한 금액만큼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가수금으로 기업에 조달된 자금을 자본금증자로 전환처리하는 경우도 있겠다.

(6) 차입금(借入金)

차입금이란 기업운영과정중에 자금이 부족하여 기업외부로부터 빌려온 차입금 즉 빚을 말하며 차입금은 이자지불을 수반하는 것이 가수금과는 다르며 차입금은 다시 은행차입금과 일반차입금 즉 사채(私債)로 세분(細分)할 수 있으나 차입금 계정속에 함께 포함시켜 처리해도 된다.

이차입금도 통상 1년이내에 변제할 조건으로 차입한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사채(私債)를 차입하는 경우 1년이상 변제기간을 두고 거래하는 경우는 거의없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도 통상 1년만기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대출을 받은 다음 약속어음의 지불기일이 도달하여 은행측과 협의 하여 약속어음을 다시 재발행하여 지불기일을 연장하게 되는데 이런 종류의 은행차입금이 단기부채로서 유동부채중의 차입금계정에 포함한다. 당초에 은행에서 차입할 당시에 1년이상으로 변제기일을 확정했든가 또는 몇년거치 몇년상환이란 조건으로 은행으로 차입한 경우에는 장기차입금에 포함시킨다.

(7) 미불비용(未拂費用)

기업운영상 발생한 경비중 지불할일자가 지나고서도 아직 지불치못한경비를 말한다. 예를들면 직원의 급료를 자금사정에 따라 제날자에 지불치 못한 경우나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지불치 못한 영체이자나 세금을 아직 납부치 못했을때의 미불 세금등을 들 수 있다. 축산업의 경우에는 세법상 축산업이 영업세법에서 규정하고있는 "영업"에 포함되지 않음으로 영업세는 해당되지 않으나 소득세법상으로는 소득세는 해당되나 소득세법 8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감면을 받을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으로 감면신청기간에 "축산업소득에대한 소득세감면신청"을 관할 세무서에 대한 감면을 받을 수 있으나 만일 감면신청기간내에 앞에서 말한 감면신청을 하면 소득세를 면제받게 되며 감면신청을 안했을 경우에는 구제받을 길이없다.

즉 소득세법 8조 2 항의 규정은 정부가 축산업진흥을 위하여 축산업에서 벌은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감면해주기 위하여 1969년 1월

1일이후부터 시행하도록 신설한 규정인데 본 규정의 감면규정은 자동감면(自動減免)이 아니라 신고감면(申告減免)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즉 축산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신청을 안해도 자동적으로 감면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축산업을 경영하여 얼마의 소득이 당해 과세기간(즉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또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등의 과세기간 동안)에 있었는데 그 소득에대한 소득세액을 계산하니 얼마의 소득세를 내야하는데 소득세법 8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해 줄 것을 신청하니 소득세감면을 해달라는 감면신청을 관할세무서에 감면 신청기간 내에 제출하여야만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사업을 하는 사람이면 거의가 현금노이로제에 빠져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정도로 세무서에 서류를 제출하기를 혼히들 꺼려한다. 필자의 경험에 의하면 축산업소득에대한 감면신청을 축산업자에게 설명한즉 그축산업자의 답변이 세무서에 신고를 안하면 내가 축산업을 하는지도 모를 것이고 따라서 세금에 대한 아무문제도 없을 터인데 왜 내발로 걸어가서 신고를하고 신청을해서 세무서에다 내가 축산업을 하고 있으니 세금을 물려달라고 할 필요가 무엇이냐? 하는 답변을 들은 일이 있다. 물론 필자의 자세한 설명을 듣고 후일에 감면신청을 내긴 하였으나 이렇한 축산업자도 간혹 있다는 것을 이기회에 알리고 세법상 규정한 다음 감면기간동안에 반드시 축산업 소득에 대한 감면신청을 잊지말고 제출할 것을 다시한번 권유하는 바이다.

축산업소득에 대한 감면신청기간

- 1기분 즉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소득에 대한 감면신청기간은 8월 31일까지이고
- 2기분 즉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에 대한 감면신청기간은 다음해 2월 28일까지이다.

위의 기간에 제출한 감면신청은 (1)축산업 소득에대한 감면신청서와 (2)소득구분 명세서이다. 먼저 소득구분명세서에는 과세기간 동안의 총 수입금을 축산업으로 부터의 수입액과 축산업이외의 사업으로 부터의 수입액을 구분하여 기입한다음 축산업에 지출된 총비용액과 축산업이외의 사업에 지출된 총비용액을 구분하여 기입하면 축산업으로 부터의 소득액과 축산업이외의 사업으로 부터의 소득액이 산출될 것이다. 이 소득액에서 기초공제액을 빼고난 과세소득에다 소득세율을 곱하면 축산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액과 축산업이외의 사업에 대한 소득세액이 산출되며 이 소득세액을 감면신청서에 기록하여 제출하면 된다. 이 때 축산업 한가지만 운영한경우에는 감면신청을 함으로서 소득세는 감면혜택을 받게되나 축산업이외의 사업도 운영하였으면 축산업 이외의 소득에대한 소득세는 납부하여야 한다.

참고적으로 한가지 더 부언하면 종합소득세는 년간 과세소득액이 300만원이 넘는 경우에 해당되는데 축산업으로부터의 과세소득액이 300만원이 넘드라도 감면신청을하면 종합소득세도 감면혜택을 받게된다.

(8) 선수금(先受金)

거래업자로부터 미리받은 물품의 대금등을 말한다. 산란계 병아리나 부로일러 병아리가 성수기에 수요는 많고 공급이 부족한 경우 흔히 부화장등에 미리대금을 맡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와같이 대금을 미리 받았을 경우 물품을 공급하기 전까지는 선수금이 되는것이며 이 또한 대금을 미리받은때로부터 통상 1년이내에 물품을 공급할 것임으로 유통부채에 속하는 것이다.

후일에 선수금으로 받은 물품을 고객에게 인도했을경우 그 금액만큼 선수금중에서 공제하여 물품대금으로 정리하면된다.

월간양계

■ 1년분 : 2000원

■ 반년분 : 1200원